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2022. 8.

금 융 위 원 회금 융 감 독 원 여신금융협회

목 차 -----

1. 추진 배경]
2. 주요 개선내용 3
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4
나.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8
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10
3. 향후 계획
(붙임) 리볼빙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13

1 추진 배경

- □ 최근 **결제성 리볼빙**(이하 '리볼빙') **이용자**와 **이월잔액***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 리볼빙 이용자가 결제일에 결제금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고 다음 달로 이월한 금액

이용자수: ('20말) 246.9만명 → ('21말) 266.1만명 → ('22.6말) 269.9만명 → ('22.7말) 273.5만명 이월잔액: ('20말) 5.39조원 → ('21말) 6.08조원 → ('22.6말) 6.55조원 → ('22.7말) 6.67조원

- □ 리볼빙은 '22.2분기 중 **평균 수수료율**(금리)이 **최저 14.1%**에서 **최고 18.4%**로 **수수료율***이 높은 금융서비스입니다.
 - * '22.2분기 중 카드사별 카드론 평균금리 : 12.1~13.9%
 - 또한,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향후 청구금액 누적**으로 **상휘부담이 증가**합니다.

[참고] 리볼빙 이용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사례

● 신용카드로 생필품 구입 등 매월 100만원의 고정 생활비를 결제하는 소비자가 리볼빙을 지속 이용하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 하는 청구금액이 증가하여 약정 결제금액, 이월잔액도 증가(약정결제비율 30% 가정)

이용기간	청구금액	약정결제금액	이월잔액
1개월	100만원	30만원	70만원
2개월	170만원	51만원	119만원
3개월	219만원	65.7만원	153.3만원

- □ 반면, 리볼빙은 금소법상 금융상품이 아닌 신용카드에 부가되는 금융서비스로 규정되어 설명서 제공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 다만, 신용카드 가입시 리볼빙의 위험성(예시 포함)은 설명하도록 규정(금소법감독규정 §12⑤)
 - 이로 인해 **금소법 시행 이후**에도 리볼빙 권유시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 □ 이에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및 업계와 함께 소비자가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숙지한 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 결제성 리볼빙 현황(전업카드사 기준) > -

- □ (이용자 및 이월잔액) '22.7월말 현재 273.5만명이 리볼빙을 이용하고 있으며, 리볼빙 이월잔액은 총 6.67조원*입니다.(1인 평균 이월잔액 2.4백만원)
 - 전년말 대비 이용자*는 7.4만명(4.8%↑, 年환산), 이월잔액은 0.58조원 (16.4%↑, 年환산) 중가하였으며, 최근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리볼빙 이용잔액을 보유한 소비자

리볼빙 이월잔액 및 이용자 수 현황

(단위: 억원, 만명, %)

구분	'19년말	'20년말	'21년말(a)	'22.7월말(b)	증감(률 [*]) [b-a]
이용자	259.7	246.9	266.1	273.5	7.4 (4.8)
이월잔액	54,670	53,913	60,823	66,658	5,835 (16.4)

* () 연 환산시 증감율

- □ (리볼빙 수수료율) '22.2분기 중 리볼빙 평균 수수료율은 최저 14.1%에서 최고 18.4%이며
 - 全 카드사가 리볼빙 수수료율을 각 사에서 운영하는 **카드론 금리** 보다 **높게 운영**하고 있습니다.(최대 5.1%)
- □ (민원) '21.1월~'22.7월 중 금감원에 접수된 리볼빙 민원은 총 128건이며
 - 민원 내용은 불완전판매 관련 87건*(68.0%), 서비스 불만 31건 (24.2%), 계약 체결 거부 10건(7.8%) 順입니다.
 - * 계약 체결 사실 미인지 68건(53.1%), 설명 미흡 19건(14.9%)

리볼빙 이월잔액 및 이용자 수 추이 리볼빙 수수료율과 카드론 금리 비교(%)



2 개선방안 주요내용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 1. 리볼빙 설명서 신설
 - ▶ 리볼빙 권유시 소비자에게 설명서를 제공한 후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
- 2.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 ▶ 카드사의 경우 **텔레마케팅**(이하 'TM')을 통한 계약 체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 하여 **판매채널별** 맞춤 설명절차 도입
- 3.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 ►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만 65세 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 ~29세)에 대해 **해피콜 실시**(불완전판매 확인시 계약해지)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 1.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
- ▶ 카드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의 금리수준을 비교·안내
- 2.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 ▶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적용받는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 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 단축
- ▶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를 단축(분기→월)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 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 ▶ 개인신용평점 뿐만 아니라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 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 ▶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어려운 **저신용자**(개인신용평점 누적비율 93%초과, 舊신용등급 7등급 초과)가 향후 **부채**가 누적되지 않도록 **리볼빙 TM 제한**
- 3. 건전성 기준 강화
- ▶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추진

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 리볼빙에 대한 ^①설명서 신설, ^②채널별 설명절차 도입, ^③해피콜 실시 등 소비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습니다.

1. 리볼빙 설명서 신설

- □ (현행) 신용카드 모집인 및 텔레마케터(TeleMarketer)의 리볼빙 권유시 별도의 설명서가 없어 주요 내용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 □ (개선) 소비자가 계약 체결 前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수 있도록 리볼빙 설명서를 신설하겠습니다.
 - 설명서에는 '^①리볼빙이 신용카드 **필수 발급요건이 아님'**, '^②리볼빙 이용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등 소비자가 리볼빙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 ▶ 상품설명서상 '리볼빙 이용 전에 확인해야 하는 유의사항' 예시
 - 리볼빙은 신용카드 신규발급시 필수조건이 아님
 - 리볼빙 이용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음
 - 리볼빙은 지속 이용시 갚아야하는 결제대금이 계속 늘어날 수 있음
 - 리볼빙은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
 - 리볼빙 **이월잔액 상환**시 결제계좌 입금 후 반드시 카드사에 **출금**을 **요청**해야 함
 - 또한, 리볼빙의 개요, 결제사례, 유사 상품과의 비교, 리볼빙이용시 불이익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 설명서에 포함되어야하는 필수사항을 반영하겠습니다.

- ▶ 상품설명서상 '리볼빙의 주요 내용' 예시
- (상품 개요) 리볼빙 적용 대상거래 및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정의 등
- (거래구조사례 비교) 리볼빙 약정결제비율별 결제 사례
- (리볼빙과 유사상품 비교) 리볼빙, 분할납부, 카드론 특성 비교
- (기한 연장 및 계약해지) 리볼빙 계약해지시 이용금액 전액을 즉시 상환
- (연체수수료율 및 기한이익상실) 연체수수료율 산식(리볼빙 수수료율+3%p) 등
- (리볼빙 이용시 불이익) 개인신용평점 하락 등
- □ (기대효과)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리볼빙의 주요 내용을 설명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불완전판매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리볼빙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공받은 리볼링 설명서를 통해 언제든지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A씨는 그간 리볼빙의 내용이 간략하게 포함된 신용카드 상품설명서를 통해 설명을 받다 보니 리볼빙의 복잡한 결제구조가 잘 이해되지 않아 이용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음
 - □ A씨는 신설된 리볼빙 설명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설명받고 리볼빙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리볼빙 이용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었음

2. 채널별 맞춤형 설명절차 도입

- □ (현행) 신용카드 표준약관상 리볼빙 설명의무가 계약 체결시점에 부여 되어 권유단계에서는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 □ (개선) 리볼빙 권유단계에서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판매채널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 (대면 채널) 신용카드, 카드론 등 금소법상 대출성 상품에 적용되는 설명의무 절차를 도입하겠습니다.

- ▶ 신용카드 모집인 등의 대면 권유시 설명의무 절차
 [®]설명서 제공 → [®]설명서 이용 주요내용 설명 → [®]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 [®]리볼빙 신청서 작성 → [®] 리볼빙 계약 체결
- ② (TM 채널) 물리적으로 설명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하여 표준 스크립트를 활용한 설명의무를 도입하겠습니다.
 - ▶ 텔레마케팅을 통한 권유시 설명의무 절차

[®]**스크립트 이용** 주요내용 설명 → [®]소비자 **이해여부 확인** → [®]리볼빙 신청 → [®]리볼빙 계약 체결 → [®]설명서 제공

[참고] 리볼빙 권유시 설명의무 이행 절차 비교

◈ 리볼빙 판매채널별 특성에 맞는 설명의무 절차 마련

성해 저비	_	개선 후 절차		
현행 절차		대면채널	TM채널	
신청서 작성시	-	설명 前	표준 스크립트에 따라	
신청서상 내용만 설명		리볼빙 설명서 제공	주요 내용 설명	
 포괄 확인		설명서 를 활용 하여	주요 내용을 질의	
('주요 내용' 단어 덧쓰기)	7	주요 내용 설명	방식 으로 확인	
계약 체결 후	-	주요 내용을 질의	계약 체결 후	
안내문 제공	_	방식 으로 확인	설명서 제공	

□ (기대효과) 소비자가 권유단계에서 리볼빙 이용 관련 장·단점 및 유의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은 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례 B씨는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면서 텔레마케터로부터 연체를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만 듣고, 리볼빙 계약을 체결함

□ 텔레마케터로부터 설명서상 주요 내용(유의사항, 상품개요, 이용시 불이익 등)이 반영된 표준스크립트를 통해 개인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3.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 □ (현행) 과도한 TM으로 금융상품 관련 이해도가 낮은 고령자(만 65세이상) 및 사회초년생(만 19세~29세)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이월잔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의 리볼빙 이월잔액 추이 20대 : ('20말) 4,574억원(비중 8.5%) → ('21말) 5,334억원(비중 8.8%)

60대 이상 : ('20말) 3,999억원(비중 7.4%) → ('21말) 4,796억원(비중 7.9%)

- □ (개선)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하여
 - 해피콜 결과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는 경우 리볼빙 계약 해지 등 사후관리를 진행하겠습니다.

▶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 대상 해피콜 절차

- 카드사는 **TM**을 통해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7영업일 이내에 **해피콜**을 실시(1일 2회 3영업일간 실시 → 미수신시 안내문자를 통해 주요사항 공지)
-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질의를 통해 다음 내용을 설명 받았는지 확인
 - 수수료율, 약정결제비율, 최소결제비율, 계약기간
 - ❷ 최소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 발생
 - ❸ 이월잔액 상환시 결제계좌 입금 후 반드시 카드사에 출금요청 필요
- □ (기대효과) 텔레마케터가 고령자 및 사회초년생에게 설명 미흡 등 으로 불완전판매를 했더라도
 - 해피콜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음으로써 계약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 사회초년생 C씨는 신용카드 발급 이후 카드사 TM을 통해 리볼빙계약 체결시 커피쿠폰 2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체결함

⇒ C씨는 해피콜 과정에서 카드사로부터 수수료율이 연 18%에 달한다는 설명을 듣고 리볼빙 계약을 해지함

나 수수료율 안내·공시 강화

◆ 리볼빙 권유시 ^①낮은 금리의 유사상품 비교・안내, ^②리볼빙 수수료율 산정 내역 제공, ^③공시주기 단축 등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드사간 자율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하여 리볼빙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겠습니다.

1.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 · 안내

- □ (현행) 카드사가 수익 확보를 위해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병을 우선 권유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 (개선) 카드사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중 리볼빙을 대체할 수 있는 분할납부^{*} 및 카드론 등의 금리수준 및 변동·고정금리 여부^{**}를 비교・안내하겠습니다.
 - *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일시불 거래를 할부거래와 같이 수수료를 내고 매월 원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 ** 카드사는 통상 리볼빙 수수료율을 3개월마다 재산정하나, 분할납부·카드론 등은 만기까지 고정 금리임

▶ 리볼빙 및 유사상품의 평균 수수료율 및 변동 여부 비교(예시)

구분	일시불 거래의	카드대출 (대출정보 등록·공유)	
	리볼빙	분할납부(2개월)	카드론
수수료율	18.43%	14.30%	14.06%
변동여부	분기별 변동	고정	고정

□ (기대효과) 다양한 대체상품의 금리를 비교·제시하여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 금융비용 부담 감소가 기대됩니다.

사례 이번 달 결제금액 전액 납부하지 못할 것 같아 리볼빙을 알아보던 E씨는 대체 상품인 카드론,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채 리볼빙계약을 체결함

⇒ E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론, 분할납부 등 유사상품의 특성과 금리에 대해 설명받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여 금융비용을 낮춤

2.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 □ (현행) 리볼빙 계약 체결시 소비자에게 수수료율만 안내하고, 상세한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안내하지 않아 우대 수수료율 등이 적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 (개선)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을 제공하여 소비자가 수수료율 구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결제성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예시)

구 분	산정 내역
기준가격 [*] (a)	16.4%
조정금리(b)	△1.0%
VIP 고객등급 우대	△0.3%
XX은행 결제계좌사용 우대	△0.2%
특판 할인	△0.5%
운영가격(c=a+b)	15.4%

^{*} 기준가격 = 기본원가(신용원가, 업무원가, 조달원가, 자본원가 등) + 목표이익률

- □ (기대효과) 수수료율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소비자 본인의 신용상태를 확인하고, 리볼빙 수수료율에 대한 이해가 향상되며
 - 카드사의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과정에서 합리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수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사례 F씨는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율을 5% 할인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리볼빙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못 함
 - ⇒ F씨는 신설된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서를 통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됨

3.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 단축

- □ (개선) 소비자가 카드사별 최근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주기를 분기에서 월단위로 단축하겠습니다.
 - *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을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카드사 선택 가능(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포털(gongsi.crefia.or.kr)에서 확인)
- □ (기대효과) 소비자는 카드사별·개인신용평점별 리볼빙 수수료율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고, 카드사의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 ^①리볼빙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②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③건전성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유도하겠습니다.

1. 최소결제비율 차등화

- □ (현행) 현행 약관상 소비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10% 이상으로 차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다수 카드사가 리볼빙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 중 약 90%*에 대해 최소결제비율 10%를 적용하고 있어 리볼빙 이월잔액이 증가 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 7개 전업카드사 평균, '21.4분기중 기준
- □ (개선) 소비자의 과도한 리볼빙 이월잔액 확대를 제한하고, 카드사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결제비율을 상향 조정 및 차등화 (리볼빙 신규 계약 체결 소비자부터 적용)하겠습니다.
 - * 타 금융업권 대출 미상환 총금액, 최근 3개월 총 연체이력 건수, 최장 연체일수 등
- □ (기대효과) 소비자별 신용도에 연동한 최소결제비율 조정을 통해 상환 능력 대비 이월잔액이 과도하게 누적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 □ (현행) 신용카드 발급 이후 신용도가 하락한 회원이 TM^{*}을 통해 리볼빙을 궈유받은 경우 리볼빙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 '21년 중 기존회원의 채널별 리볼빙 계약 체결비율 : 텔레마케팅(60.0%), 온라인 (27.7%), 콜센터(소비자가 리볼빙 계약 체결을 위해 먼저 연락)(6.8%), 신용카드 모집인(4.6%)
 - 이 경우 일시적으로 **연체**를 피할 수 있으나, **장기 이용**시 **채무 누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 (개선) 신용카드 발급 이후 신용도가 하락하여 신용카드 추가발급이 어려운 기존 회원*(이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TM을 통한 리볼빙 판매권유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신용카드 발급시에는 개인신용평점이 발급기준(개인신용평점 누적 93%초과, 舊신용등급상 7등급 초과보다 높았으나 이후 신용도 하락으로 개인신용평점이 신용카드 발급기준에 미달하는자
 - ※ 신규회원의 경우 개인신용평점 누적 구성비가 93%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하여 리볼빙 계약도 체결할 수 없음
- □ (기대효과) 저신용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저신용자의 경우 수수료율이 높은 리볼빙 이용보다 카드사별로 **운영** 하는 **대환대출** 등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3. 건전성 기준 강화

- □ (현행) 최근 리볼빙 이월잔액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리볼빙 관련 신용손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 (개선) 리볼빙 관련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 (예)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상 '요주의' 기준 강화(현재 총이용한도 대비 이월잔액이 80% 이상인 경우 요주의로 분류), 다중채무자 등에 대한 리볼빙 충당금 추가 적립 등

3 향후 계획

- □ 리볼빙 관련 금번 개선방안은 자율규제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 다만, 건전성 기준 강화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 □ 이에 따라, 향후 **여신금융협회**는 개선방안이 구체화된 **표준약관**과 모범규준*을 개정하고
 - * 「비대면 카드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 「카드대출 금리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여신금융상품 공시기준」
 - 각 카드사는 **개별약관 개정** 및 **전산개발** 등을 거쳐 '22.8.31.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 □ 금융당국은 개선방안 시행 전까지 **설명 미흡**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에 자체적인 관리 강화**를 이미 **지도**하였습니다.
 - 향후 카드사들이 금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일정>

개선(안)	시행시기
가. 리볼빙 서비스 설명의무 강화	
① 리볼빙 설명서 신설	′22.11월
② 채널별 맞춤 설명절차 도입	′22.11월
③ 고령자 등의 TM을 통한 리볼빙 계약 체결시 해피콜 도입	′22.11월
나. 수수료율에 안내·공시 강화	
① 카드사의 대출성 상품금리와 리볼빙 수수료율 비교·안내	′22.11월
② 리볼빙 수수료율 산정내역 제공	'22.11월
③ 리볼빙 수수료율 공시주기 단축	′22.8월말
다. 리볼빙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 유도	
① 최소결제비율 산정기준 합리화	′22.11월
② 저신용자 대상 리볼빙 TM 제한	'22.9월
③ 건전성 기준 강화	'23년 상반기

※ 추진 세부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리볼빙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수수료율 부분]

- □ 리볼빙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서비스입니다.
 - * 평균금리('22.2분기 기준): 리볼빙 14.1~18.4%, 카드론 12.1~13.9%
- ② 리볼빙 수수료율은 변동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신용도, 연체이력 등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될 수 있습니다.
- ③ 리볼빙 수수료율 우대(마케팅 우대 등)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단기간(예: 3개월)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납부 부분]

- ① 결제일까지 최소결제금액 미만을 납부하는 경우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리볼빙 이월잔액 상환시 결제계좌 입금 후 반드시 카드사에 출금을 요청*해야 합니다.
 - * 카드사는 결제일 약정결제대금 자동이체와 연체시 연체대금만 출금가능하며, 이월잔액 상환은 소비자의 출금지시가 있어야만 계좌에서 출금가능
- ③ 리볼빙은 중도상화시 **중도상화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

- ① 리볼빙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 [2] 리볼빙은 이용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③ 리볼빙 이월잔액을 단기간 내 상환하지 않는 경우 약정결제금액이 누적되어 상환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4 리볼빙 만기 시점에 리볼빙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 이월 잔액 전체를 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